

직권조치결과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1년 05월 03일

적량면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이 *영	이 *영 1985-11-16	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중서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1-05-03